###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11. .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춘천시청사 건립』, 『후평3 동주민센터 신축 및 구 환경출장소 부지 매각』,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조성』,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유지교환』에 관한 사항임

#### 1) 춘천시청사 건립은

○ 1957년 건립된 현 청사는 건물이 노후 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며 분산 배치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과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 불편사항이 제 기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시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서비 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임

### 2)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 및 구 환경출장소 부지 매각은

○ 현 청사의 노후, 주차장 협소, 주민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 청사 내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10년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안임.

○ 또한 2004년도에 후평3동 청사용으로 매입한 구)환경출장소는 후평제3아 파트재건축사업 확정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의한 부지축소, 재건축사업 지 진출입로 등 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매입용도의 기능상실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임.

#### 3)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조성은

○ 1980년대 요양 약수 명소인 추곡약수터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기존의 노후·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약수물로 특화된 「친환경 관광휴 양형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 소하고자 함.

#### 4)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유지 교환은

-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신축부지 중 일부가 국립춘천박물관 부지 와 중첩되어 인접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 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이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취 득 $\Rightarrow$ 3 건 , 처 분 $\Rightarrow$ 1 건 , 교 환 $\Rightarrow$ 1 건

#### [취득]

- 건물 취득 **⇒** 2건 ( 39,614m² / 93,300백만원 )
  - ◇ 춘천시청사 건립: 1건/ 38,114㎡/ 90,000백만원
  - ◇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 : 1건/ 1,500㎡/ 3,300백만원
- 토지 취득 ➡ 5필지 ( 8,825m² / 566백만원 )
  - ◇ 추곡약수터 조성: 5필지/ 8,825㎡/ 566백만원

#### [처분]

- 토지 처분 ➡ 1필지 ( 1,170m² / 2,900백만원 )
  - ◇ 구환경출장소부지: 1필지/ 1,170㎡/ 2,900백만원

#### [교환]

- 교환 처분 ➡ 1필지 (1,513㎡ / 271백만원)
  - ◇ 시유지(임야) : 석사동 산 29-3번지 / 1,513㎡ / 271백만원
- 교환 취득 ➡ 1필지 ( 1,351㎡ / 271백만원 )
  - ◇ 박물관부지: 석사동 95-3번지 / 1,351㎡ / 271백만원

(단위 : 천원/m²)

# 춘천시청사 건립

○ 1957년 건립된 춘천시 청사의 경우 노후 및 사무공간 협소, 분산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시청사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위 치 : 춘천시 옥천동 111-1번지 일원(현 청사부지)

○ 부지면적 : 27,026㎡(8,175평)

○ 건물면적 : 38,114㎡(11,529평)

○ 조성시설 : 본청(사무공간 및 사무지원공간, 공용공간, 설비공간 등)

의회(의장실 및 본회의장, 위원회실, 대기실 등)

지하주차장(500대)

기타(민방위대피시설 및 전시실, 시 금고 등)

○ 사 업 비 : 900억원 (시비)

#### □ 취득현황

· 건물취득(신축)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지적	건물면적	취득시기	사업비
계				38,114		90,000,000
신축	건물	옥천동 111-1 일원	27,026	38,114	2015 ~ 2018	90,000,000

※ 재산취득 재원확보 : 청사건립기금 600억, 특별회계 300

### □ 시설물 배치계획(안)

○ 총면적 : 38,114㎡

구 분	면 적	배 치 계 획
총계	38,114m²	
본 청	17,759 m²	사무공간(사무실), 대회의실, 민원실, 식당, 기록물관리실, 전산실, 공보실, 서고, 기계실 등
의 회	3,345 m²	의장실, 위원장실, 본회의장, 위원회실, 사무실, 대기실, 휴게실 등
지하주차장	15,000 m²	주차대수 500대
기 타	2,010 m²	재난상황실, 모자휴게실, 민방위대피시설, 시 금고, 전시실, CCTV관제센터 등

<sup>※</sup> 세부 배치계획은 추후 실시설계 진행시 확정함.

###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5년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년 1월

○ 착 공 : 2016년 3월○ 준 공 : 2018년 5월

### □ 활용방안

- 본청 및 의회의 업무 공간 및 민원 공간 활용
- 소규모 공연장 및 공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시민이용 증대

### □ 기대효과

- 노후된 청사의 신축으로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
- 본청과 의회의 신축으로 업무편의 향상
- 미래지향적이고 에너지 절감 설비로 청사 운영의 내실화

# 취득대상 재산 목록 현황

○ 건물 : 38,114㎡

· 건물취득(신축)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지 적 (㎡)	건물면적 (㎡)	취득 시기	사업비
À				38,114		90,000,000
신축	건물	옥천동 111-1일원	27,026	38,114	2015 ~ 2018	90,000,000

<sup>※</sup> 세부 배치계획은 추후 실시설계 진행시 확정함.

#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 대상지 위치 및 계획도



# 취득대상지 현황



#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 및 舊)환경출장소 매각계획

- 현 청사의 노후, 주차장 협소, 주민자치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축규모 확대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10년간 주민숙원사업),
- 당초 주민센터 용도로 매입한 舊 환경출장소의 기능상실로 인하여 매각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 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

- 위 치 : 후평동 805-1, 2 (면적 : 1,121㎡) ※ 2필지

- 면 적 : 1,500㎡ (지상 3층)

층 수	연면적	층별용도	주차대수
지상3층	<b>1,500㎡</b> (454평)	<ul><li>· 지상 1층 : 주차장, 기계실</li><li>· 지상 2층 : 민원실, 서고, 동대본부</li><li>· 지상 3층 :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li></ul>	지상 50면 ※ 이면도로 70면

※ 건물 준공 후 사무실기능 재배치 검토(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기능 분리)

- 소요예산 : 34억원(신축 33억원,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억) ※ 설계비 1.5억원 포함

- 부지현황

(단위 : m²)

위 치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HI	고
Я	1,121					
후평동 805-1	820	제2종일반주거지역	00%	1 200%		
후평동 805-2	301	1 제2중칠만무기시역   	80%	1,300%		

#### ○ 舊)환경출장소 매각

- 위 치 : 후평동 67-7(舊,환경출장소 부지)

- 면 적: 1,645㎡ (매각 1,170㎡, 도시계획도로 편입 475㎡)

- 매각시기 : 2016년도 상반기

-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 1,460백만원(매각 1,040, 도시계획도로 420)

지 번		면 적		공시지가	가감정가
시 인 	계	매각부지	도로편입	등 지시가	가급경기
후평동 67-7	1,645 m²	1,170 m²	475 m²	1,460,760천원 (888,000원/㎡)	40억원

※ 가감정가액 : 40억원(매각 29, 도시계획도로 11)

### □ 취득개요(계획등)

○ 재산의 위치 : 후평동 805-1, 2(2필지), 1,121㎡

○ 취득재산 총괄현황

구분	층수	연면적	사업비	시설내용	비고
신축	지상 3	1,500 m²	33억원	· 지상 1층 : 주차장, 기계실 · 지상 2층 : 민원실, 서고, 동대본부 · 지상 3층 :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	동

○ 재산취득 재원확보 계획 : 시비 33억

### □ 처분개요

○ 재산의 위치 및 현황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매각면적	매각추정금액 (가감정가)	비고
토지	후평동	67-7	대	1,645	1,170	29억원	도시계획 도로제외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5년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 : 2016년 1월
- 건물신축
  - 설계용역 : 2016년도 1차 추경예산 확보(1.5억) 및 추진
  - 공사추진 : 2017년도 당초예산 확보(32.5억) 및 추진
- 舊)환경출장소 매각 : 2016년도 상반기

### □ 기대효과 등

- 기존의 노후된 주민센터 신축으로 쾌적하고 친밀감 있는 행정관서로 탈바꿈하고 문화·여가 기능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당초 주민센터 용도로 매입한 舊 환경출장소의 기능상실로 인한 매각 으로 토지활용도 제고

#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 현황

### ○ 건물 취득(신축)

(단위:m²,천원)

구분	소재지	구 조	연면적	예정가격	신축 시기	주소	성명	비고
건물	후평동 805-1,2(1,121㎡)	철근 콘크리트	1,500 m²	3,300,000	2018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	

### ○ 토지 처분(매각)

(단위:m²,천원)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매각 면적	매각추정금액 (가감정가)	비고
토지	후평동	67-7	대	1,645	1,170	2,900,000	도시계획 도로제외

#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 □ 후평3동 주민센터

#### ○ 주차대책



#### ○ 전경 및 공사계획



# □ 舊]환경출장소

### ○ 위치도



### ○ 전경사진



#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특화사업

- 1980년대 요양 약수명소인 추곡약수터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약수물로 특화된 「친환경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
- 북부권역(북산면)의 성장거점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

○ 위 치 :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3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총 36,965㎡ ※ 심의 대상부지 8,825㎡

○ 사 업 비 : 35억원 [시비 22.5억(보상비 10억 포함), 도비 12.5억]

※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 도비 12.5 / 시비 12.5

#### ○ 조성시설



### □ 사유지 취득(편입)부지 현황

### 《 심의대상 부지 : 관광휴양시설 - 숙박시설, 상점》

(단위 : 천원/㎡)

종류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면적	취득시기	보상비
			10,824	8,825		566,000
토지	추곡리 133	전	1,210	1,126	2016 ~ 2017	70,000
토지	추곡리 134	전	4,493	3,111	2016 ~ 2017	196,000
토지	추곡리 134-3	전	3,890	3,749	2016 ~ 2017	236,000
토지	추곡리 134-4	전	660	660	2016 ~ 2017	42,000
토지	추곡리 138-8	대	282	179	2016 ~ 2017	22,000

#### 《 기타부지 5,937m² ⇒ 심의제외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 기반시설의 경우 제외

구분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 계		3,581
	추곡리 116-3	대	198
	추곡리 116-8	대	256
지구단위	추곡리 138-1	전	976
계획구역	추곡리 138-5	전	219
(도로, 주치장, 녹지,	추곡리 138-6	대	363
공원 등)	추곡리 138-7	전	160
	추곡리 138-8	대	103
	추곡리 138-9	전	1,297
	추곡리 138-12	전	9

구분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계		2,356
	추곡리 109-1	전	538
	추곡리 112	답	397
	추곡리 138-4	전	106
	추곡리 139	전	456
진입	추곡리 139-2	전	110
도로	추곡리 140	전	138
	추곡리 142-1	전	365
	추곡리 산 160-2	임	2
	추곡리 산 170-1	임	196
	추곡리 산 172-1	임	45
	추곡리 산 172-2	임	3

####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5년 12월

○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2016년 1월

○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 2016년 8월

○ 보상완료(취득) : 2017년 11월

#### □ 심의대상지 활용(안)

- 농촌체험 숙박시설
  - 힐링팜 체험, 농촌체험 관광열차, 소양호농촌인성학교 연계
  - 주민주도형 소득창출 : 추곡 낚시터, 사명산, 특산물판매장과 연계
- 지역특산물 판매장
  - 약수물로 특화된 지역 음식 및 농산물 전시·판매(쌀, 국수, 인삼, 막걸리 등)

#### □ 기대효과

- 기존의 노후, 방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관광·휴양시설로 효율적 이용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주민 소득 및 편의시설 증대
- 주변 관광지(사명산, 청평사, 추곡낚시터 등) 및 배후령 이용 관광객 유입 기대

# 취득대상 재산 목록 현황

(단위 : 천원/m²)

연번	종류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면적	취득시기	보상비
합계				10,824	8,825		566,000
1	토지	추곡리 133	전	1,210	1,126	2016 ~ 2017	70,000
2	토지	추곡리 134	전	4,393	3,111	2016 ~ 2017	196,000
3	토지	추곡리 134-3	전	3,890	3,749	2016 ~ 2017	236,000
4	토지	추곡리 134-4	전	660	660	2016 ~ 2017	42,000
5	토지	추곡리 138-8	대	282	179	2016 ~ 2017	22,000

※ 보상비 : `16년 당초예산 10억 책정(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액 확정)

#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 대상지 위치 및 계획도



# 취득대상지 현황



# 춘천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유지 교환

춘천시립도서관 신축부지 중 일부가 국립춘천박물관 부지와 중첩되어 인접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신축 개요

○ 사 업 명 : 춘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따른 국유지 교환

○ 위 치 : 춘천시 석사동 산27-1번지 외 4필지(석사근린공원 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9,040㎡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7,645㎡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80, 도비 36, 시비 84)

○ 사업기간 : 2013 ~ 2017

### □ 교환토지 현황

→	분	처 분 대 상	취 득 대 상			
위	치	석사동 산 29-3번지	석사동 95-3번지			
면	적	1,513 m²	1,351 m²			
재산	가액	271백만원(공시지가)	271백만원(공시지가)			
소 운	가	춘천시	국 (문화체육관광부)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5년 12월

○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행 : 2016년 1월

○ 토지교환 시행(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 2016년 3월

### □ 기대효과 등

○ 토지교환을 통해 도서관 신축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 □ 교환대상 재산 목록 현황

### ○ 취득 토지

(단위:㎡.천원)

일련	재신	산의 표	포시	취득	재산가액		<u>-</u>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공시지가 (단위면적㎡당)	시기	주 소	성명	비고	
계	토지		49,417	1,351	271,551					
1	석사동 95-3	대지	49,417	1,351	271,551 (201,000원)	2016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 ○ 처분 토지

(단위:m².천원)

일련	재신	<u></u> 의 포	ŦЛ	처분	재산가액		2	<b>노유자</b>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공시지가 (단위면적㎡당)	시기	주 소	성명	비고	
계	토지		95,839 1,513		271,432					
1	석사동 산29-3	임야	95,839	1,513	271,432 (179,400원)	2016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		

### □ 교환대상 재산 위치도 및 사진

○ 취득대상토지 (국유지, 석사동 95-3)



취득 대상 토지(국유지)





#### 【별첨 2】

# <u>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u>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4-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H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구 분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애	고
	계	토지 건물 기타	6 2	10,176 39,614	837,551 93,300,000	6 2	10,176 39,614	837,551 93,300,000					
추	1. 매 입			566,000	5	8,825 566,000							
UI.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1,351	271,551	1	1,351	271,551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2	39,614	93,300,000	2	39,614	93,300,000					신축
	계	토지 건물 기타	2	2,683	3,171,432	2	2,683	3,171,432					
え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1	1,170	2,900,000	1	1,170	2,900,000					
ᆫ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1	1,513	271,432	1	1,513	271,432					

# 2016년도 정기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4-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 5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71 7 121	71 77171	주	소	성 명	
합 계	토지 건물		8,825 39,614	566,000 93,300,000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	
1	건물	춘천시 옥천동 111-1 일원	38,114	90,000,000	2016~2018	춘천시청사건립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	신축
2	건물	춘천시 석사동 805-1외1	1,500	3,300,000	2016~2018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	신축
3	토지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33외4	8,825	566,000	2016~2017	추곡약수터 관광휴양시설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	매입

# 2016년도 정기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4-3)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재산의 표시		매각면적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	비고	
번호	지목	소 재 지	총면적	-" , _ ,	0,1,	-11 ) 121	-11 77 171	주 소	성 명	
합 계	토지			1,170	2,900,000					
1	토지	춘천시 후평동 67-7	1,645	1,170	2,900,000	2016	후평3동 주민센터 기능상실			

# 2016년도 정기분 교환대상 재산목록 (4-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OI	일련번호			7	대산의 표시		교환대상	예정가격 (추정감정가)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	비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총면적	면 적		<u> </u>	표원자ㅠ	주 소	선 성명	] U 12
		토지	처 분				1,513		2016				
   겨		エハ	취 득				1,351	271,551	2010				
1	' _	건물	-										
		기타	-										
	1	1	ᅱㅂ	처분 임야 석사동 산	95,839	1,513	271,432	2016	시유지-국유지	세종시 갈미		1	
	1	1	시스		29–3	33,003	1,010	211,402	2010	교환	388	관광부	
	3	3	취득	대지	석사동 95-3	49,417	1,351	271,551	2016	"	춘천시 시청 11	청길 춘천시	

## 관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15.1.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중감된 경우
-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 11 · 26, 2012 · 11 · 20>